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 추가〉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966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 추가	2

I. 개요

1. 백선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96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1. 12.
- (3) 회 부 일 : 2026. 1. 1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 ----- ----- ----- ----- ----- ----- ----- -----.
가. ~ 허. (생략)	가. ~ 허. (현행과 같음)
<신설>	고. 「노후준비 지원법」
<u> </u> 고. (생략)	<u> </u> 노. (현행 고목과 같음)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하는 각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 1. 「건강가정기본법」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노후준비 지원법」을 현행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하여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의 혜택 및 의무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될 경우, 현행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지정에 따른 혜택과 의무 >

	내용	관련 조항·지침
혜택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종사자 경력 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공과금 감면 - 전기료 20%, 가스료(산업용 단가), 상수도료(30%)	전기료(전기공급약관 신고대상인 사회복지시설) 가스료(지자체별 도시가스공급규정) 전화요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법정기부금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소득세법」 제34조
의무	재무·회계규칙 준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설 안전점검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후원금의 관리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노인 빈곤으로 인한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국가 재정의 과도한 소요 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준비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하여 공정성·투명성·적정성을 도모하고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65세 이상 인구 및 상대적 빈곤율 추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5세 이상 인구 (명)	7,650,408	8,026,915	8,496,077	8,851,033	9,267,290	9,730,411	10,256,782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4.7	15.5	16.4	17.1	18.0	18.9	20.0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	42.0	41.4	39.1	37.6	38.1	38.2	35.9

자료: 국가데이터처(지표누리 e-나라지표)

- 「노후준비 지원법」에서는 중앙·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²⁾하고 있는데, 동법이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규정된다면, 국고 및 지방보조금 지원³⁾,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실무경험 인정⁴⁾,

2)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특수 직무수당 인정⁵⁾, 사회복지시설 근무시 유사경력으로써 호봉 80% 산정⁶⁾ 등의 기대효과가 있어, 노후준비지원센터 종사자 등의 보수나 처우가 개선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2조제1호⁷⁾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노후준비를 하는 모든 영역에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모두 복지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포괄적 내용의 노후준비를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되더라도 노후준비지원센터 등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설치·신고 절차, 시설·안전 기준 및 인력·자격·운영 기준을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

- [별표1]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급 취득가능
- [별표3]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급 응시가능

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

- (요건①)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월 7만원)
- (요건②) 요건① 지급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2년 이상 근무한 자(월 3만원)

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5

- ① (80% 인정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각 목 생략)

충족하여야 하고 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설·인력 기준에 따른 규율을 두 가지 법률에서 이중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⁸⁾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의 개정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노년기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하게 하는 조치로서 찬성하며, 아울러 노후준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력 인정 등 사회복지사 처우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497

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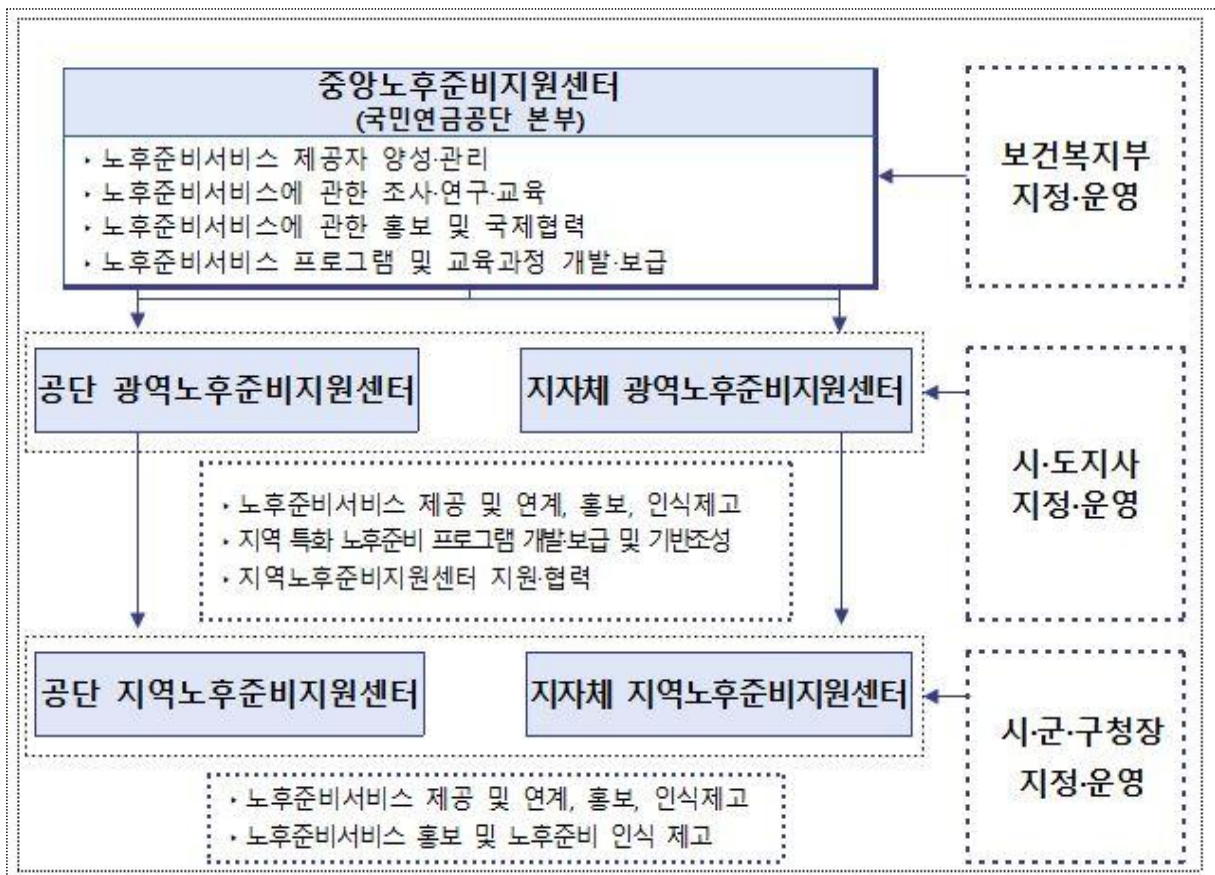
【참고】	노후준비지원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	-----------------------------

- **(개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광역·지역 노후준비센터**를 지정하여 역할에 따른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관련근거)** 「노후준비지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도 >



- **경과 과정**

- '15.6월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에 따라 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 및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확대
- '21.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이 개정되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확대(10개 지자체 참여, '25.12월 기준)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운영) 국민연금공단 본부(노후준비지원실)
- (주요업무) 노후준비 서비스제공자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노후준비 지자체 사업 지원 등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운영) 공단 3개소 및 광역시도 지자체 2개소
- (주요업무)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운영) 공단 지사, 시군구 지자체 8개소
- 주요업무
 - (공단거점지사 및 지자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 발굴
 - (공단거점지사 이외 지사) 「노후준비 지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간주하여 제도 상담 및 노후준비서비스 연계

< 노후준비지원센터 현황 >

(2025.12월 기준)

구분	국민연금공단	지자체(기관명)
중앙	공단본부	-
광역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남동연수지사	인천광역시(고령사회대응센터)
	전주완주지사	
지역	지사 112개소 (거점지사 40개소*)	부산시 북구(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상구(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전북 김제시(김제노인종합복지관)
		강원도 춘천시(춘천미래동행재단)
		서울시 성동구(성동 50+센터)
		경기도 부천시(신중년 노후준비지원센터)
		대전시 서구(서구 노인장애인과)
		서울시 영등포구(영등포 50+센터)

* 권역별 40개 거점지사에서 상담사·강사로 구성된 노후준비서비스팀을 별도 운영 중